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년월일 : 202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 1)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 추가
- 2)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신고확인증) 환불 방법 변경

### 나.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변경

-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변경
- 2) 대형폐기물의 품목 수수료 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1. ~ 2024.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6696(2024. 4. 26.)]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6890(2024. 4. 30.)]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④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b>가전제품류(20품목)</b>			<b>가구류(16품목)</b>			<b>기타(17개 품목)</b>			
냉장고	1,000ℓ이상	20,000	장롱	120cm 1쪽	15,000	창	목재(쪽당)		
	500ℓ이상	9,000		90cm 1쪽	12,000		대형(높이1.5m이상)	3,000	
	300ℓ이상	7,000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300ℓ미만	6,000		6인용 이상	7,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밥상	6인용 미만	6,000		새시(쪽당)		
탈수기	모든규격	3,000		6인용 이상	3,000		대형(높이1.5m이상)	4,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싱크대	6인용 미만	2,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길이 2m이상	7,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책상	길이 2m미만	5,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양수, 대형	7,000		새시(쪽당)	대 형	12,000
			편수, 소형	6,000	중 형	8,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모든규격	2,000	소 형
에어컨	264m²이상	8,000	매트리스	퀵사이즈이상	8,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66m²이상	7,000		1인용	1인용		5,000	높이1m미만	3,000
	66m²미만	5,000	의자		퀵사이즈이상	9,000	자전거	운동기구용	7,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2인용	2인용	8,000		성인용(2발)	4,000
	12인치이상	5,000			1인용	1인용		6,000	아동용(2-3발)
	42인치미만		응접세트용 원목 100cm 이상			응접세트용 원목 100cm 미만	5,000	유모차	모든규격
	12인치미만	3,000		소형 모든규격	2,000	깨진 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오디오	대형	5,000	장식장	5단이상	8,0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3,000		4단이상	6,000	소형		1,500	
컴퓨터	본체(노트북 포함)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모니터	3,000	문갑	모든규격	5,0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키보드	1,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장판	kg당	500	
	프린터 대형(레이저)	5,000	4단이상	5,000	카펫 (카튼류)	kg당	500		
스피커	프린터 소형(잉크젯)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목재	kg당	500	
	높이1m이상	3,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플라스 틱류	kg당	500	
온풍기	높이1m미만	2,000	소파	대형(4인이상)	9,000	페소	3.3kg이하	2,000	
	264m²이상	8,000		중형(3인)	7,000		화기류	3.3kg초과~19kg이하	5,000
	66m²이상	7,000			소형(1~2인)	5,000		19kg초과	10,000
난로	66m²미만	5,000	<b>생활용품류(8개 품목)</b>			보드	스키, 보드	4,000	
	33m²이상	4,000	벽시계	대 형	3,000		부츠	(스키,보드용) 모든규격	3,000
가스오	33m²미만	3,000		인형류	중·소형	1,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브레인지	높이1m이상	5,000		모든규격	1,000			
전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선풍기	모든규격	3,000		중·소형	1,000			
공기청정기		업소용(대형)	5,000	가방	여행용가방 높이 100cm이상 (골프백,캐리어등)	4,000			
	가정용(소형)	3,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이상		2,000				
온수매트 (전기장판)	높이1미터 이상	6,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미만		1,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액자	길이 2m이상	6,000				
더블	5,000	길이2m 미만		4,000					
싱글	3,000	길이 1m이상		2,000					
안마의자	대형(전신)	20,000	길이 1m미만	1,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중·소형(반신)	10,000	진열대	길이 1m미만		3,000			
피아노	모든규격	6,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업라이트	15,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p> <p>1. 2. (생략)</p> <p>3. <u>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발급받아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u></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4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u></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u></p> <p>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u></p>

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면  
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  
하여야 한다.

###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가전제품류(17품목)			가전제품류(20품목)			
냉장고	500ℓ이상	8,500	냉장고	1,000ℓ이상	20,000	규격추가
	300ℓ이상	7,000		500ℓ이상	9,000	▲500
	300ℓ미만	6,500		300ℓ이상	7,000	
		300ℓ미만		6,000	▼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탈수기	모든규격	3,5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5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청소기	모든규격	3,000	▲1,000
가습기	모든규격	1,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미만	5,000		66m <sup>2</sup>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1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5,000	규격추가
				12인치미만	3,000	
오디오	대형	5,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소형	3,000	
컴퓨터	일반형	3,000	컴퓨터	본체(노트북 포함)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노트북	1,500		모니터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키보드		1,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프린터 대형(레이저)		5,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프린터 소형(잉크젯)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스피커	높이1m이상	5,000	스피커	높이1m이상	3,000	▼2,000
	높이1m미만	3,000		높이1m미만	2,000	▼1,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이상	7,000	
	66m <sup>2</sup> 미만	5,000		66m <sup>2</sup> 미만	5,000	
난로	33m <sup>2</sup> 이상	4,000	난로	33m <sup>2</sup> 이상	4,000	
	33m <sup>2</sup> 미만	3,000		33m <sup>2</sup>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5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1m이상	5,000	▼500
	높이1m미만	3,000	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1,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1,000
선풍기	모든규격	1,500	선풍기	업소용(대형)	5,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가정용(소형)		3,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공기청정기	높이1미터 이상	6,000	공기청정기	높이1미터 이상	6,000	품목추가
	높이1미터 미만	3,000		높이1미터 미만	3,000	품목추가
온수매트 (전기장판)	더블	5,000	온수매트 (전기장판)	더블	5,000	품목추가
	싱글	3,000		싱글	3,000	품목추가
안마의자	대형(전신)	20,000	안마의자	대형(전신)	20,000	품목추가
	중.소형(반신)	10,000		중.소형(반신)	10,000	품목추가



현행			개정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가구류(16품목)			가구류(16품목)				
장롱	120cm 1쪽	15,000	장롱	120cm 1쪽	15,000	▲2,000	
	90cm 1쪽	10,000		90cm 1쪽	12,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응접세트	삭제		의자항목에편입	
	의자	5,000	식탁	대리석식탁	15,000	규격추가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6인용 미만	6,000		
밥상	4인용 식탁	2,000	밥상	6인용 이상	3,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4인용 미만	1,500		6인용 미만	2,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길이 2m미만	5,000		길이 2m미만	5,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편수, 소형	6,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2인용	5,000	침대목재	퀵사이즈이상	8,000	규격추가	
	1인용	3,000		2인용	7,000	▲2,000	
매트리스	2인용	5,000		1인용	5,000	▲2,000	
	1인용	3,000	매트리스	퀵사이즈이상	9,000	규격추가	
의자	모든규격	2,000		2인용	8,000	▲3,000	
	장식장	5단 이상		8,000	1인용	6,000	▲3,000
5단 이하		6,000	의자	응접세트 용 원목 100cm 이상	7,000	규격변경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응접세트용 원목 100cm 미만	5,000	규격변경
	모든규격	5,000		소형 모든규격	2,000	규격변경	
문갑	모든규격	5,000	장식장	5단이상	8,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이상	6,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소파		모든규격	4,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대형(4인이상)	9,000	4단 이상	5,000			
	중형(3인)	7,000	모든규격	모든규격	2,000		
소형(1~2인)	5,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생활용품류(9개 품목)			생활용품류(8개 품목)				
필통	모든규격	3,000	필통	삭제			
				대형	3,000	▲1,000	
벽시계	대형	2,000	벽시계	중소형	1,000		
	중소형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규격추가	
장난감류	모든규격	1,000		중·소형	1,000		
	가방	모든규격	1,000	가방	여행용가방 높이 100cm이상 (골프방카리어등)	4,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가방		모든규격	1,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이상	2,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모든규격	1,000		여행용가방 높이 60cm미만	1,000	규격및수수료 변경

현행			개정안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생활용품류(9개 품목)			생활용품류(8개 품목)			
액자	길이 1m이상	1,500	액자	길이 2m이상	6,000	규격추가
	길이 1m미만	1,000		길이 2m 미만	4,000	규격추가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이상	2,000	
	길이 1m미만	3,000	길이 1m미만	1,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피아노	업라이트	11,000	캐비닛	길이 1m미만	3,000	
	그랜드	15,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5,000
피아노	업라이트	15,000	피아노	업라이트	15,000	▲4,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비고
기타(15개 품목)			기타(17개 품목)			
창	목재(쪽당)		창	목재(쪽당)		
	대형(높이1.5m이상)	3,000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새시(쪽당)		새시(쪽당)			
	대형(높이1.5m이상)	4,000	대형(높이1.5m이상)	4,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새시(쪽당)	4,000	일반문	새시(쪽당)	4,000	
수족관	대형	12,000	수족관	대형	12,000	
	중형	8,000		중형	8,000	
	소형	4,000		소형	4,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높이1m미만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아동용(2발)	2,000		아동용(2발)	4,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아동용(3발)	2,000		아동용(2-3발)	3,000	규격 및 수수료 변경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항아리	대형	2,0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1,500		소형	1,5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모든규격	3,500	변기통	모든규격	4,000	▲500
장판	kg당	500	장판	kg당	500	
카펫	kg당	500	카펫 (커튼류)	kg당	500	규격추가
목재	kg당	500	목재	kg당	500	
플라스틱류	kg당	500	플라스틱류	kg당	500	
폐소화기류	3.3kg이하	2,000	폐소화 기류	3.3kg이하	2,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19kg초과	10,000		19kg초과	10,000	
보드	스키, 보드	4,000	보드	스키, 보드	4,000	품목추가
부츠	(스키,보드용 모든규격	3,000	부츠	(스키,보드용 모든규격	3,000	품목추가

# 관계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 - 2340